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9호의5서식] <신설 2023. 6. 14.>

외국인체류확인서

발급번호	발급일자

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	

일련번호	성명	전입일자	비고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)한 외국인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출입국 · 외국인청(사무소 · 출장소)장 /
○○ 읍 • 면 • 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

직인

유 의 사 항

확인하려는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)한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